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4888 제출연월일: 2024. 10. 24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개인투자조합, 창업기획자,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등록 취소 등 제재처분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'중소벤처기업부고시'에서 '중소벤처기업부령'으로 상향하여 위임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2조제4항 중 "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"를 "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렁으로 정한다"로 한다.
제36조제3항 중 "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"를 "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렁으로 정한다"로 한다.
제49조제3항 중 "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"를 "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렁으로 정한다"로 한다.
제62조제5항 중 "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"를 "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렁으로 정한다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 혂 제22조(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제22조(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) ① ~ ③ (생 략)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 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 ----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 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 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 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렁으로 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정한다. 제36조(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제36조(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) ① • ② (현행과 같음) 등) ① • ② (생 략)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 처분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-----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 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 로 정한다. 제49조(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| 제49조(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) ① · ② (생 략) 등) ① • ② (현행과 같음)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 -----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 처분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 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 로 정한다. 제62조(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제62조(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) ① ~ ④ (생 략)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